

##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규정

### 제 1 장 총 칙

#### 제1조 (목적)

이 규정은 주식회사 두산(이하 “회사”라 한다)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고 한다)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## 제2조 (적용범위)

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,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#### 제3조 (직무와 권한)

- (1) 위원회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사외이사 후보의 추천권을 가진다.
- (2) 위원회는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할 자를 결정함에 있어 상법 제363조의2 제1항, 제542조의6 제1항·제2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주주가 추천한 후보를 포함시켜야 한다.
- (3) 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성과 및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규정(이하 “본 규정”이라 한다)의 내용을 매년 검토하여, 필요한 경우 본 규정의 개정을 이사회에 건의한다.
- (4) 위원회는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과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.

## 제 2 장 구 성

### 제4조 (구성 및 임기)

- (1) 위원회 위원(이하 “위원”이라 한다)의 선임 및 해임은 이사회 의 결의로 한다.
- (2) 위원회는 3인 이상의 사외이사로 구성한다.
- (3) 위원의 임기는 동 위원의 이사로서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까지로 한다.

### 제5조 (위원장)

- (1) 위원회는 제8조 규정에 의한 결의로 위원장을 선정한다.
- (2)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회의시 의장이 된다.
- (3)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별로 업무를 분장할 수 있다.
- (4)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활동내용의 요지에 대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- (5) 위원장이 부재중이거나 유고시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, 제8조 규정에 의한 결의로 선임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(이하 “직무대행자”라 한다). 단, 위원장이 위와 같은 사정으로 직무대행자 선임을 위한 결의를 위한 절차를 주재할 수 없는 경우 참석자 중 선임 위원, 연장자의 순으로 주재하기로 한다.

## 제 3 장 회 의

### 제6조 (소집권자)

- (1)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 그러나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제5조 제5항에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(2)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.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2주일 이상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집을 요구한 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### 제7조 (소집절차)

- (1) 위원회를 소집함에는 회의일을 정하여 늦어도 회의일 직전일까지 위원 각자에 대하여 문서, 전자문서 또는 구두로써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.
- (2)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.

### 제8조 (결의방법)

- (1)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한다.
- (2)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·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으로 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
## **제9조 (부의사항)**

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1. 사외이사후보의 추천
2. 사외이사후보 추천을 위하여 필요한 일체 사항
3. 기타 위원장이 위원회의 결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상정한 사안

## **제10조 (사외이사 후보)**

- (1) 위원회는 회사의 투명한 지배구조 확립과 이사회의 전문성 제고에 적합한 사외이사후보를 추천하여야 한다.
- (2) 위원회는 사외이사후보추천 자문단이 추천하는 사외이사후보자들 중 사외이사후보를 선정하여야 한다.

## **제11조 (관계인의 의견청취)**

- (1)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- (2) 위원회는 위원회의 결의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.

## **제12조 (의사록)**

- (1)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.
- (2)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요령, 그 결과,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.

## 제 4 장 보 칙

### 제13조 (간사)

- (1) 위원회에는 간사를 둘 수 있다.
- (2)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 전반을 담당한다.

### 제14조 (규정의 개폐)

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.

부 칙 (2009. 3. 27.)

이 규정은 2009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2012. 3. 30.)

이 규정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단, 제4조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은 2012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2013. 2. 4.)

이 규정은 2013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.